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16호
- 나. 제출자 :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국기 게양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신설 (안 제7조)

4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
-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대한민국 국기법」 및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연중게양 의무와 국기 게양 규격 조항을 반영하고
- 국기게양대 설치 대상을 유사기관까지 확대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공기관 청사 등에 게시된 국기가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서 정한 규격대로 바르게 설치 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대한민국국기법

[시행 2014. 1. 28.] [법률 제12342호, 2014. 1. 28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1. 5. 30.>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 10. 25.] [국무총리훈령 제696호, 2017. 10. 25., 타법개정.]

제5조(옥외 국기 게양 규격)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, 고층·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.

1. 국가기관,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의 청사 : 3호기(270센티미터×180센티미터) 이상
2. 시·군·자치구,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: 5호기(180센티미터×120센티미터) 이상
3. 읍·면·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: 7호기(135센티미터×90센티미터) 이상